

茶山 丁若鏞의 深衣說 연구

劉 權鍾(中央大 哲學科)

1. 緒論

深衣는 先王의 法服으로서 유학자들에게 중시되던 복식이었다. 深衣는 喪服과 더불어 古制를 보존하고 있는 복식이며, 또한 그것이 상징하는 의미의 세계가 곧 유학의 이상의 구현과 긴밀한 관련이 있는 까닭에 儒服으로서 가치가 높았다. 때문에 많은 유학자들이 그것의 제조와 착용에 많은 관심을 지녔다.

茶山(丁若鏞, 1762~1836)은 그의 『喪禮四箋』 가운데 衣衾 棺槨을 다룬 「喪具訂」에서 襲衣의 일종으로 深衣의 제도를 다루었다. 「상구정」은 古今의 喪具의 제도와 유래, 그 용도를 학문적으로 자세히 고찰한 것이다. 「상구정」에서 다산은 독자적인 시각에서 자세한 훈고와 고증의 방법을 동원하여 심의의 제도를 다시 정립하였다. 심의를 습의의 일종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부정적인 다산의 입장으로 미루어볼 때¹⁾ 그가 深衣를 자세하게 고찰하게 된 까닭은 襲衣로서의 심의의 제도를 밝히려고 한 데에 한정되지 않는 것이다.

그가 습의의 일종, 혹은 喪具의 한 항목으로서 深衣의 제도를 고찰하는 방법은 다른 유학자들에 비해 보면 이례적인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司馬光은 『書儀』에서 冠禮의 복식으로 다루었고, 朱熹는 『朱子家禮』에서 通禮의 한 항목으로 심의제도를 다루었다. 조선의 유학자들이 심의제도를 다루는 것은 대체로 위 두 예서의 방식에 준하고 있다.²⁾ 그 외에 별도의 서한이나 논설의 방식을 통하여 심의제도를 언급하고 있는 경우가 있고³⁾, 嘯齋(朴珪壽, 1807~1876)는 『居家雜服攷』라는 별도의 복식관계 저술 속에서 다루었고, 性齋(許傳, 1797~1886)는 『士儀』라는 의례서의 別集인 『士儀別集』法服篇에서 다루었다. 또 喪服用 심의 제도도 있다.⁴⁾

비록 다산이 심의를 상구의 일종으로 고찰하였다고 해서 그의 심의제도의 논점이 당시 유학자들의 심의제도의 논점과 동떨어진 것은 결코 아니었다. 오히려 그는 당시 조선의 유학자들 혹은 중국 역대의 학자들의 심의 제도에 관한 학설들을 검토하고, 그 경전적 근원부터 여러 주석들을 거론하고 비판하는 과정을 거쳐서 新說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당시에는 상례의 斂襲衣는 생전에 사용하던 복식들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풍속이었다. 때문에 다산이 상구의 일종으로 심의제도를 다룬 것은 당시 유학자들이 儒服의 일종으로 심의제도를 다

* 이 논문은 1999년도 중앙대학교 학술연구과제지원에 의하여 연구된 논문임.

- 1) 『與猶堂全書』(한아름출판사 영인본) 13책 59쪽, 學稼問 近世上自大臣 下至儒坐 其襲必用深衣 今何不用 答襲用深衣 九經無文 古者大夫用免服 士用弁服 弁服者今祭服朝服 是也 但朝服上下皆纁 必非古制 唯祭服上玄下纁 最與古合 朝官之喪不可不用 必無是而後 乃可用團領.
- 2) 『家禮輯覽』, 『家禮講錄』, 『家禮考證』, 『四禮便覽』, 『常變通攷』 등의 四禮書들이 대부분 그러하다.
- 3) 寒岡(鄭述, 1543~1620)의 「深衣製造法」, 星湖(李瀾)의 『星湖禮說類編』의 「深衣辨證」, 久菴(韓百謙)의 「深衣說」, 愚伏(鄭經世)의 「答權仲明論深衣」 등이 그러한 예이다.
- 4) 鄭惠敬, 『深衣』 경남대출판부 1998년, 115~116쪽에서 소개한 안공(1569~1648)의 『家禮附贅』의 심의제도가 그것이다.

문 것과 사실상 하나의 맥락을 형성하는 것이다.

深衣제도는 복식의 제도이므로 대체적으로 복식분야의 연구 주제가 될 법하고, 철학적 탐구의 주제가 되기는 어려운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복식으로서 심의의 상징적 형태는 미학적 요소를 지닌다. 또한 儒服 또는 先王의 法服으로 불리는 深衣는 禮에 의한 修身과도 긴밀한 관계가 있다. 이를 종합해보면 심의제도의 탐구는 경전의 해석과 고증이라는 경학적 탐구의 문제뿐 아니라, 유교의 도덕적 인격의 추구, 및 유교의 정치적 이상의 구현을 위한 방법론과도 긴밀하게 결부됨을 알 수 있다. 때문에 철학의 분야에서도 심의는 하나의 중요한 탐구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더구나 우리가 조선시대 유학자들의 선비의식의 세계, 또는 그들이 삶의 과정에서 지녔던 관심의 세계와 그 흐름을 이해하고자 한다면, 심의제도에 관해서 논의되었던 그 역사와 내용들을 외면할 수는 없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산이 세운 심의 제도의 특징과 의의를 살피고자 한다. 방법은 문헌의 고찰과 함께 실물 제작을 통한 실증적 검토의 방법을 함께 사용한다. 그 작업을 통해서 논자가 얻고자 하는 부수적 결과는 과거에 밝혔던 다산의 예학적 관점의 특징들을 입증하는 한편,⁵⁾ 그의 예학적 관점이 지니는 특징을 한국 유학사의 어떻게 定位해야 할 것인가를 논할 수 있는 학문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점이다.

위와 같은 목적에 부합하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순서에 의하여 고찰을 진행하고자 한다. 먼저 1장에서는 유학자들의 심의 제도설에 관한 연구의 의의가 어디에 있는가를 심의의 복식 형태와 용도에 담긴 의미의 세계를 중심으로 해서 살핀다. 이어서 2장에서는 심의 제도에 대한 논란의 근원과 내용이 무엇인가를 살펴본다. 심의 제도법의 근원은 『禮記』 深衣篇과 玉藻篇에 있으나 논란의 직접적 이유는 그것에 대한 주석의 차이점에 존재한다. 다산의 학설까지 포함해서 모든 심의 제도에 관한 학설은 경전 주석의 역사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다산을 전후해서 조선의 유학자들의 심의제도에 관한 학설들은 몇 가지 유형으로 구별되는 갈래와 흐름이 존재한다. 이 흐름과 다산의 학설은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 하는 점을 3장에서 다룬다. 4장에서는 다산의 학설을 검토한다. 그리고 다산의 심의 제도에 따라 심의를 실물제작하여 그 실제 모양을 밝혀본다. 결론에서는 심의 제도에 관한 학설을 통해서 본 다산의 예학적 관점과 내용의 특징과 의의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자 한다.

1. 深衣 제도설 연구의 방향과 의의

(1) 深衣가 선호된 이유

조선시대에 심의는 『朱子家禮』의 실천과 더불어 儒服으로서 유학자들에게 중시되었다. 『朱子家禮』에는 冠婚喪祭에 두루 적용되는 通禮의 필수항목으로 深衣制度를 제시하였다. 이는 儀禮에 부합하는 삶의 방법으로서 深衣라는 복식이 필수적이라는 예학적 입장을 보여준 것이다. 마치 祠堂이 冠婚喪祭를 실행하는 데 필수적인 의례공간이 되는 것과 동일한 의미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朱子家禮』의 深衣制度和 深衣圖는 실용성과 상징성을 충분하게 반영하는 것은 못되었다. 실제로 『朱子家禮』의 방식대로 深衣를 제작하게 되면 착용할 때에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한다.⁶⁾

5) 拙稿, 「茶山禮學研究」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1991, 187~192에서 논한 내용 가운데, 본 연구와 관련하여 입증하려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古禮를 회복하는 것이 진정한 儀禮실천을 가능케 한다는 그의 입장, 古禮를 회복하기 위하여 내세운 방법론으로서 以經證經의 방법(訓詁와 考證), 意解의 방법, 中國 漢代 이후의 注疏學의 전통의 극복 등이다.

6) 이에 관해서는 제3장 朝鮮의 深衣制度說에서 다룬다.

士大夫家 儀禮의 지침서였던 『朱子家禮』의 심의 제도가 불완전했던 사실은 조선의 유학자들에게 深衣制度에 대한 탐구의 열기를 불러왔다. 특히 사림과의 道義를 躬行實踐하는 기풍과 道學의 근원에 대한 진지한 탐구의 학풍이 古禮를 존중하는 의식과 결부되어 대두되는 16세기부터 심의제도에 대한 연구와 실물제작이 병행하였다. 그 결과 조선말까지 수많은 圖와 說이 나타났다. 그렇게 된 이유로는 심의의 상징성이 유교의 도덕 또는 예의와 긴밀한 관련이 있다는 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작할 때 근본이 되는 제도에 애매한 부분이 많아서 학설이 구구할 뿐 정리되지 않는 문제 등으로 생각된다.

深衣가 조선시대 유학자들의 선호하는 복식이 된 직접적인 이유는 北宋의 司馬光이 獨樂園에 은거할 때에 『禮記』의 古制에 의거하여 深衣를 燕居의 복식으로 지어 입었고, 南宋의 朱熹도 그것을 제작하여 입었던 사실 때문이었던 듯 하다. 丘濬의 『家禮儀節』은 벼슬에 있으면서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은 時制에 따른 복식을 착용해야 하지만, 은거하고 벼슬하지 않는 사람 또는 政事를 그만두고 私家로 돌아온 사람(致政居家者)은 深衣 一襲을 만들어서 살아있을 때는 제사와 燕居의 복장으로 삼고 죽어서는 襲殮하는 喪具로 사용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입장이다.⁷⁾ 사마광 주자 등이 심의를 직접 제작하고 착용했었다는 사실이 조선 유학자들의 심의 선호 의식을 형성한 것이 틀림없다.

또한 그 재질은 질기고 튼튼하면서 동시에 값비싸지 않게 장만할 수 있다(完且弗費)⁸⁾고 규정되어 있다. 鄭玄은 그 재료가 원래 15升布라고 하는데, 이는 대단히 가는 울로 짠 布이므로 조선의 현실에서는 구하기가 쉽지 않았다.⁹⁾ 그래서 조선시대 유학자들은 15승포를 일정불변의 법도로 간주하지 않고, 구하기 쉬우면서도 질긴 재질을 갖추고 동시에 廣幅이 적절한 麻布, 苧, 綿布 등도 심의의 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지녔다.¹⁰⁾ 재료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점도 역시 심의가 선호되는 실제적인 이유인 것이다.

(2) 深衣의 상징과 의미

먼저 심의의 용도는 文과 武, 男과 女, 貴와 賤, 吉과 凶에 두루 걸쳐있다. 『禮記』深衣篇에서는 그 용도를 文과 武에 고루 착용할 수 있으며, 擯相에도 사용할 수 있고 軍旅를 다스릴 때도 착용할 수 있다고 한다.¹¹⁾ 呂大臨(1040~1092)은 “심의의 용도는 上下가 똑같은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꺼리지 않고, 吉凶에 제도를 똑같이 하는 것을 꺼리지 않고, 男女가 똑같이 착용하는 것을 꺼리지 않는다.”고 설명한다.¹²⁾

7) 『常變通攷』卷2, 23後에서 재인용.

8) 完且弗費는 원래 『禮記』深衣의 경문이다. 정현은 이를 苦衣而易有也라고 해석했다. 이 뜻은 견고하고 길거서(完韌) 잘 헤어지지 않는 옷이면서(苦衣), 또한 쉽게 구하여 갖출 수 있는 것이라는 의미이다.(『朴珪壽全集』 아세아문화사 영인본 1227쪽(『居家雜服攷』)) 『禮記集說』에서 方氏의 설은 복식의 제도에 다섯 가지 법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完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 재질은 布이고 그 색은 염료를 사용하지 않은 白色이므로 많은 비용이 들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한다.(制有五法 故曰完 其質則布 其色則白 故曰弗費)

9) 참고로 喪服의 斬衰服은 3升布이다. 1승이 80올이므로 참취에 사용하는 베는 한 폭이 240올이다. 15승포를 사용하는 심의는 布 한 폭의 올 수가 1200올이다. 그러므로 15승포는 極細布이다.

10) 『朴珪壽全集』 1228쪽

11) 『禮記』深衣, 故可以爲文 可以爲武 可以擯相 可以治軍旅

12) 이는 『禮記集說』深衣篇의 주석이다. 藍田呂氏曰 深衣之用 上下不嫌同名 吉凶不嫌同制 男女不嫌同服. 같은 곳에서 그렇게 볼 수 있는 예로 드는 것은 제후는 아침에 朝服을 입고 저녁에 深衣을 입으며, 大夫와 士는 아침에 玄端을 입고 저녁에 深衣를 입는 것, 有虞氏가 심의를 입고 養老하는 것, 庶人은 吉服으로서 심의를 입는 것 등은 上下가 똑같은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꺼리지 않는 것이고, 將軍 文子가 상복을 벗고 조문을 받을 때 練冠에 深衣를 입었던 것, 親迎하는 여자가 도중에서 시

심의는 그 명칭에서 그 옷의 특징이 드러난다. 우선 심의의 명칭은 그 복식이 취하는 의미가 깊다는 것을 시사한다는 설과, 또한 몸을 깊숙하게 가리는 작용을 한다는 설명도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천자로부터 서인에 이르기까지 보편적으로 쓰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깊다고 보는 견해가 있고,¹³⁾ 또 심의의 제도를 규정하는 상징적 형태들은 천지 인물로부터 취한 것이므로 그 제도의 의미가 깊다고 보는 견해도 존재한다.¹⁴⁾ 후자의 경우에는 몸을 깊숙하게 가리는 작용이 前裳과 後裳이 상호 연결되어서 몸을 노출시키지 않는다는 점 때문으로 보는가,¹⁵⁾ 또는 衣襟에 袷(衽)을 덧대어서 몸의 앞부분이 쉽게 열리지 않도록 한다는 점 때문으로 보는가¹⁶⁾와 같은 해석의 차이가 존재한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여서 심의의 의미를 규정한 사람은 職齋이다. 조선말 실학자로 불리는 그에 의하면 심의라는 명칭은 첫째 그것이 深邃한 法象을 지녔고, 둘째 深邃한 文章을 지녔고, 深邃한 制度를 지녔다.¹⁷⁾ 그래서 深衣는 深邃之衣라고 그는 호칭한다. 이러한 설명이 있게 된 것은 환제 이전에 많은 유학자들 특히 중국과 조선의 성리학자들과 실학자들에 의하여 그 상징적 의미에 대한 설명이 다양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하였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그러한 설명이 가능했던 것은 근본적으로 심의제도를 규정한 『禮記』 경문에 그러한 내용이 시사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외에도 儒服으로서 심의가 선호된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면, 무엇보다도 심의의 형태를 통해서 표현하고자 했던 상징적 의미가 그 이유가 될 것이다. 심의가 상징하는 바와 그 의미에 대해서 深衣篇에서 거론된 것은 다음과 같다.

- ㉠ 制度에 열 두 폭이 있어서 열 두 달에 응한다(制十有二幅 以應十有二月)
- ㉡ 소매는 둥글어서 規에 응한다(袂圓以應規)
- ㉢ 굽은 것은 矩와 같아서 方에 응한다(曲袷如矩以應方)
- ㉣ 등줄기의 끈은 선은 발꿈치까지 이어져서 直에 응한다(負繩及踝以應直)
- ㉤ 裳의 아랫자락은 權衡과 같아서 平에 응한다(下齊如權衡以應平)

위 내용은 일단 복식 자체의 형태의 상징을 밝힌 것이지만, 유학자들이 儒服으로서 심의를 중요하게 간주한 것은 단순히 옷 자체의 상징적 형태 때문만은 아니다. 심의를 착용했을 때 체득되는 마음가짐과 몸가짐, 또는 그로 인해서 실천하게 되는 유교의 도덕이 있음을 유학자들이 중시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점에 대한 규명으로서 가장 근원적인 것은 역시 심의편의 글이다.

“그러므로 規는 손을 들어서 행하여 위용을 나타내고, 등에 繩을 지고 가슴으로 方을 껴안은 것은 그 정치를 정직하게 하고 그 義를 방정하게 하는 때문이다. 그러므로 易에서 말하기를 ‘坤의 六二의 動은 곧고 그로써 방정하다’고 하였다. 아랫자락의 齊一함이 權衡과 같

부모의 부음을 받았을 때 深衣에 흰 명주로 머리를 묶고(縞總) 상가로 급히 가는 것 등은吉凶에 복식의 제도를 똑같이 하는 것을 꺼리지 않는 예이고, 동시에 남녀가 똑같이 착용하는 것을 꺼리지 않는 예가 된다.

- 13) 『古今圖書集成』禮儀典 3205, 嚴陵方氏曰 經曰有虞氏深衣而養老 傳曰庶人服短褐深衣 則自天子至於庶人皆服之也 以其義之深名之.
- 14) 『禮記集說』深衣篇, 方氏曰十二幅應十二月者 仰觀於天也 直其政方其義者 俯察於地也 格之高下可以運肘者 近取諸身也 應規矩繩權衡者 遠取諸物也 其制度固已深矣
- 15) 『禮記集說』陳澧註, 朝服祭服喪服 皆衣與裳殊 惟深衣不殊 則其被於體也深邃 故名深衣
- 16) 앞으로 살피게 될 茶山의 관점이 이에 속한다. 다산의 이 관점은 星湖로부터 계승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說文解字』와 『爾雅』에서 그 근원을 얻을 수 있다.
- 17) 『居家雜服攷』 1283쪽, 深衣者何謂也 以其有深邃之法象也 有深邃之文章也 有深邃之制度也 故曰深衣也 深邃之衣也

다는 것은 志를 안정시키고 마음을 평안하게 지니는 까닭이다. 다섯 가지 법이 이미 베풀어졌으므로 성인이 그것을 입는 것이다. 그러므로 規矩는 그 無私함을 취하고, 繩은 그 곧음(直)을 취하고, 權衡은 그 공평함을 취한다. 그러므로 先王이 그것을 귀하게 여겼다. 그러므로 文의 복식이 될 수 있고, 武의 복식이 될 수 있고, 擯相할 수 있고, 軍旅를 다스릴 수 있으며 질긴데다가 쉽게 구할 수 있으니 善衣의 다음간다.”¹⁸⁾

이 글을 통해서 심의를 法服 또는 儒服으로 중시하는 근거를 삼을 수 있다. 그 점을 부연하여 복식이 인간의 마음가짐 및 몸가짐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를 잘 설명한 학자는 臧齋이다. 그에 의하면 湯임금에게 盤에 銘이 있었고, 武王에게 几杖과 牖戶의 명이 있었고, 周公에게 欵器의 戒가 있었듯이, 군자의 기물과 복장에는 귀가 듣는 것 눈이 보는 것이 至義를 간직한 것이 아님이 없었다고 밝힌다.¹⁹⁾ 그는 위에 소개한 기물들보다도 더 사람의 몸에 친밀한 것으로 衣만한 것이 없다고 하고,²⁰⁾ 그것을 통해서 군자의 마음가짐과 몸가짐을 갖추면서 또한 군자의 위용을 드러낼 수 있는 복장이 곧 심의라고 간주한다.²¹⁾ 그 설명 가운데서 주목되는 내용을 소개한다.

“이러한 까닭에 군자는 심의를 입어서 그 굽은 깃(曲裕)의 엄밀함을 보이고 소매의 긴 부분을 접어 넣어서 팔꿈치에 닿게 하고 아랫자락이 발꿈치까지 닿으니 비록 머리 모양을 곧게 하지 않으려 하고, 손 모양을 공손하게 하지 않으려 하고, 발 모양을 무겁게 하지 않으려 하더라도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군자의 움직임에 용모는 이로부터 暴慢함을 멀리하게 되는 것이다.”²²⁾

이 글은 深衣가 군자의 용모를 가다듬게 하는 기능이 있음을 설명한 것이다. 즉 착용했을 때에 심의의 형태가 이루어지게끔 하기 위하여 취하여야 하는 일정한 태도가 있고, 그 태도가 곧 군자다운 용모가 된다는 사고이다. 이는 臧齋만의 사고가 아니라 당시 유학자들의 일반적인 생각이라고 추측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심의의 기능을 낳는 것은 무엇일까? 修身의 효과를 나타나게 하는 심의의 복식 기능의 근원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그것은 다름 아닌 위에서 언급한 다섯 가지 법도와 그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심의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그러한 상징적 형태를 낳는 제도라고 보아도 무리가 없다.

그러나 제도를 언급한 深衣篇의 경문과 玉藻篇의 경문은 애매한 부분이 존재한다. 그들을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深衣 遺物의 실제 형태를 經文의 제도와 견주어 보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그러나 중국 先秦시대의 자료들과 漢代의 복식자료들 및 그 후의 중국의 심의의 형태는 다양하다. 또 시대별로 나타난 심의제도에 대한 주석과 圖說들도 일관된 내용이 적고 각양각색이다. 그래서 일정한 비교의 기준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이점이 유학자들의 고민하는 부분인 셈이다.

18) 『禮記』深衣, 故規者行舉手以爲容. 負繩抱方者 以直其政方其義也 故易曰 坤六二之動 直以方也 下齊如權衡 以安志而心也. 五法已施 故聖人服之 故規矩取其無私 繩取其直 權衡取其平 故先王貴之 故可以爲文 可以爲武 可以擯相 可以治軍旅 完且弗費 善衣之次也. 맨 앞의 손을 들어서 規의 모양을 나타낸다는 것은 揖讓의 예를 가리킨다고 풀이된다.

19) 『朴珪壽全集』1289, 湯有盤之銘 武王有几杖牖戶之銘 周公歛器之戒 君子之於器服 凡耳之所接 目之所寓 莫非至義之所存也

20) 上同, 蓋近身之物 莫尙於衣也

21)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분석과 설명이 필요하므로 이 고찰에서는 제외한다. 전체적으로 『朴珪壽전집』下冊의 「深衣廣義」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22) 上揭書 1291~1293, 是以君子衣深衣 而見其曲裕之嚴密 袂長之反肘 下齊之及踝 雖欲頭容不直也 手容不恭也 足容不重也 不可得也 是以知君子之動容貌 斯遠暴慢也

(3) 심의제도 연구의 의의와 방향

오늘날의 관점에서 본다면 유교는 문화, 학문, 사상, 종교, 혹은 교육으로서 다양하게 인식된다. 유교를 구성하는 동시에 유교를 대표하는 요소들은 다양하다. 宗廟 社稷 書院 鄉校 文廟/朝服 祭服 深衣 緇衣 喪服/理學 經學 禮學 心學 聖學 實學/四禮 五禮 六藝/小學 大學/四書 五經 十三經 등 다양한 범주의 다양한 요소들의 복잡한 상호관계와 그 변화가 일으키는 전체의 형상, 작용 또는 그 흐름이 바로 유교인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유교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는 것이고, 어떠한 방법으로 표상되는가?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영역은 다양한 차원이 있다. 그리고 유교의 정체성은 유교를 이해하는 사람의 안목의 폭과 깊이에 따라 다양하게 감지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유교라는 전체의 형상, 또는 작용을 일으키는 하부의 각각의 영역과 그 속의 다양한 요소들을 떠나서 유교가 무엇인가를 논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러한 요소들을 떠나서 유교가 별도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유교의 정체성을 그것들을 떠나서 별도로 구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유교는 그것들이 표상하는 각각의 형태와 작용을 통틀어서 이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심의와 같은 복식도 유교라는 전체의 하위 요소로서 그 밖의 학문과 사상, 및 종교, 교육 등의 요소들과 상호 관련되어 있거나 혹은 상호 융합되어 있는 상태에서 유교가 무엇인가를 여실히 보여준다. 그러므로 심의 제도는 복식의 영역에 국한되거나 고립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복식을 통해서 유교의 正體를 보여주는 단면에 해당하는 것이 深衣이다.

심의제도에 관한 과거 유학자들의 논의의 세계는 經學的 관점, 문화적 식견, 종교적 심정, 교육적 관심, 미적 감도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다. 또 거기에는 유교 도덕의 개인적 성취, 그리고 도덕적 사회 건립의 일상적 기초의 확립 등의 공통된 목적의식들이 근저에서 작용하고 있다. 그러한 목적의식이 특히 복식의 형태 및 기능과 긴밀한 관련을 맺고 나타난 것이 곧 심의제도에 관한 논의라고 한다면, 심의제도의 연구는 그 범위를 단순히 복식의 제도와 구성의 원리에 관심을 한정시키는 것보다는 상징과 의미의 세계로 확장하여 그들의 근본적 관심사를 읽어내는 쪽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²³⁾

따라서 복식의 제도와 구성 그 자체로도 중요한 연구과제가 되지만, 유교적 修身과 治人을 위한 방법론의 차원에서 심의의 제작과 착용이 연구과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전반적인 유교문화의 차원에서 본다면, 건축 음식 등과 함께 인간의 일상생활에 일정한 삶과 태도의 방식을 제시함으로써 인간의 마음과 몸에 유교적 도덕을 일체화하는 틀로서 중요한 방법적 요소이기도 하다.

유학자들이 제시한 심의의 제도와 형태들은 다양하다. 적어도 심의제도와 그 형태는 유학자들의 복식 구성과 그 기준에 관한 인식과 관심을 반영한다고 보아도 무리가 없다. 그런 인식과 관심은 곧 문화, 학문, 도덕, 종교, 윤리 등과 융합된 실천과 유교의 성취라는 목적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다만 그것을 정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유학자 개인의 심의제도에 관한 학설들에 대한 각론적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한 의미에서 본 연구에서는 심의 제도를 정립했던 다산이 의존했던 경학적 관점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히고자 한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그것의 예학사적 의미까지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가 정립한 제도와 그에 의하여 제작된 심의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형

23) 이러한 언급은 철학분야의 연구자들도 유교 복식에 관한 연구과제가 있음을 밝히려는 의도로 표현한 것이다. 이미 복식학계의 연구들은 이점에 주목하여 진행되고 있다. 일례로 정혜경의 『深衣』(경남대 출판부)는 복식과 그 상징 및 의미의 세계를 하나로 엮어서 보려고 한 시도이다.

태적 특징이 있는가를 함께 밝히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그러한 내용을 주제로 삼아서 연구하고, 심의의 상징 세계에 대한 연구는 차후의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2. 심의제도에 관한 논점들

다산과 다른 학자들의 심의 제도에 관한 학설들을 검토하기에 앞서서, 경학적으로 문제되는 심의제도의 논점들을 정리해 본다.

심의의 제도를 규정한 가장 오래된 문헌은 『禮記』深衣篇과 玉藻篇이다. 이 글들이 언제 성립된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적어도 西漢 이전의 중국의 복식 제도를 담은 글들이라고 간주된다.²⁴⁾ 한대 이후의 중국 고대의 복식의 제도는 다른 민족들의 복식과 혼용되면서 원형을 잃어갔지만 거의 유일하게 喪服과 더불어 심의가 고대의 복식제도를 그대로 전하고 있는 것이었다. 고대의 복식제도라는 점이 과거의 유학자들에게 또 현대의 연구자들에게 깊은 매력을 끄는 것이다.

현대의 학자들이나 과거의 유학자들이 지니고 있는 관심에 차이가 있더라도 공통적인 것은 제작과 착용이 가능한 실제적인 제도법의 정립이고, 또한 착용했을 때에 경문에 규정된 내용처럼 유학의 도덕을 상징하는 형태가 나와야 한다는 점이다. 黻齋는 그 점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衣裳은 몸에 맞아야 할 뿐이다. 法象의 아름다움과 文章의 훌륭함은 이에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제 몸에 맞아야 하는 것은 衣裳의 實用이고, 文章과 法象은 衣裳의 能事이다.”²⁵⁾ 즉 實用이 충족되어야만 상징(文章 法象)도 나타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것이 가능하게 되려면 기본적으로는 布幅을 결정하고, 옷과 신체의 비례를 측정하는 尺寸 등의 척도에 관한 인식이 뚜렷해야 하고, 또한 訓詁와 考證에 의한 경문의 정확한 해석이 요청된다. 척도에 관해서는 근본적으로는 指尺을 근본으로 삼고 있지만, 시대마다 布의 길이를 설명하는 척도의 단위에 出入이 있기 때문에 실증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 經文해석의 문제는 역대 유학자들마다 이견에 이견을 거듭하고 있고 복잡한 갈래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근본으로 돌아가서 그 이견의 근원이 되는 내용들을 검토하는 것이 상책이다.²⁶⁾

이러한 문제들의 근원은 곧 『禮記』의 深衣篇과 玉藻篇의 경문이다. 그러므로 『禮記』의 경문을 근거로 심의제도의 기준이 되는 사항을 정리해 본다. 이 내용에 논점이 담겨있다.

“옛날에 심의에는 제도가 있어서 規와 矩와 繩과 權과 衡에 응하는 모양이었다. (심의의 길이가) 짧아도 피부가 보이지 말게 하고 길어도 땅바닥을 덮지 말게 하며, 續衽하고 鈎邊하고, 허리에 衣裳을 봉합한 부분의 길이는 裳의 아랫자락의 둘레의 반이고(要縫半下), 裕의 높이는 팔꿈치를 돌릴 수 있어야 하고(裕之高下 可以運肘), 소매의 길이는 접어 넣었을 때 팔꿈치에 닿도록 한다. 帶는 아래로 허벅지를 누르지 말고 위로는 옆구리를 누르지 말도록 하여 뼈가 없는 곳에 댈다. 제도에 열 두 폭이 있어서 열 두 달에 응하고, 소매는 둥글게 하여 規에 응하고, 굽은 깃(曲袷)은 矩와 같아서 方에 응하고, 등솔기의 끈은 선은 발꿈치까지 내려와서 直에 응하고, 裳의 아랫자락의 가지런함은 權衡과 같아서 卽에 응한다.……父母와 大父母가 살아계시면 衣의 가선은 무늬있는 천으로 두르고, 부모가 살아계시면 衣의

24) 屈萬里, 『古籍導讀』臺灣開明書店印行 民國53年, 176쪽에 의하면 『禮記』의 全篇이 戰國부터 西漢시대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한다.

25) 『朴珪壽全集』1284쪽, 衣裳者適其身而已 法象之未 文章之盛 乃可見也 適其身者 衣裳之實用也 文章 法象者 衣裳之能事也

26) 이에 대해서는 이은경, 「韓國과 中國의 布帛尺에 關한 研究」서울여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3이 좋은 참고가 된다.

가선은 청색으로 두르고, 孤子같은 衣의 가선을 흰색으로 두른다. 소매부리에 가선을 두르고 옷의 가장자리에도 가선을 두르는데 넓이는 각각 촌반이다.”²⁷⁾

또 「玉藻」편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아침에 현단복을 입고 저녁에 심의를 입는다. 심의는 袪를 세 배로 하고(三袪), 裳 아랫자락의 봉합한 둘레의 길이는 허리 둘레의 배가 되고, 衽은 옆에 대며(衽當旁), 소매는 팔꿈치를 움직일 수 있다. 소매의 가운데 폭(中)을 길게 하고 손을 가리는 폭을 이어 붙인다. 깃의 넓이는 2촌이고 소매부리의 넓이는 1척 2촌이고 가선의 넓이는 촌반이다. 비단(帛)으로써 布의 안을 대는 것은 예가 아니다.”²⁸⁾

다양한 심의 제도에 관한 학설들이 제시되었지만, 모든 차별적인 심의 제도설의 근거는 이 경문들이다. 또 각각의 제도설이 經文에서 규정한 상징의 형태를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실제로 그에 의하여 제작하고 착용했을 때 그 형태가 제대로 나오는가 하는 점이다. 그 점을 근거로 누구의 설이 정확한 것인가를 따지기는 어려워도 그들 사이의 우열을 가리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심의 제도에 관해서 논란이 많았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우선 경문에 대한 注疏가 애매하기 때문에 그에 의하면 옷의 형태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못한다는 점이 가장 커다란 이유이다. 그러나 심의라는 복식의 구성 자체가 특이하여 제작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점도 실질적인 이유가 된다. 즉 朝服 祭服 喪服은 모두 衣와 裳이 분리되어 있으나 오로지 深衣만이 衣裳이 연결되어 있어서 제작상의 어려움이 크다. 그렇게 衣裳을 연결시키는 방식이 전체적인 深衣의 형태를 결정하게 된다. 經文에는 이 연결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다. 그러나 鄭玄의 注와 孔穎達의 疏가 있었어도 그것들로는 해석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다. 때문에 이후에도 제도에 관한 이견이 속출하였던 것이다. 그러한 이견의 근원은 곧 경문의 몇 구절로 소급된다. 그것들을 차례로 들면 다음과 같다.

우선 가장 논란이 되는 경문은 深衣篇의 續衽과 鉤邊이다. 이들에 관해서는 뒤에 자세히 다루게 될텐데 미리 간단하게 논점을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續衽에 관해서는 衽의 개념이 문제가 된다. 대체로 衽을 裳幅으로 보는 견해가 있고, 衣襟에 잇는 袷으로 보는 견해가 대립한다. 이와 관련된 경문이 玉藻篇의 衽은 옆에 댄다(衽當旁)는 것이다. 심의편의 경문과 옥조편의 이 경문이 상호 증거가 되어서 심의의 형태를 결정하는 주요한 의미를 지닌다.

둘째, 굽은 깃은 矩와 같아서 方에 응한다(曲袷如矩以應方)는 것이 있다. 깃은 복식의 형태를 결정하는 요소인데, 이 구절은 심의의 깃의 모양을 결정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매우 중시되는 것이다. 심의편의 이 경문은 심의를 直領衣로 보아야 하는가 方領衣로 보아야 하는가 하는 차이를 가져온다.

셋째, 소매의 형태와 길이를 의미하는 구절로서 논란이 되는 것은 심의편의 ‘소매의 길이는 접어 넣었을 때 팔꿈치에 이르러야 한다’(袂之長短 反詘之及肘), 옥조편의 ‘소매는 팔꿈치를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袂可以回肘)는 것이다. 그리고 소매의 형태를 둥근 規의 형태가 이어지도록 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도 논의가 일정하지 않다.

27) 『禮記』深衣, 古者深衣蓋有制度 以應規矩繩權衡 短毋見膚 長毋被土 續衽鉤邊 要縫半下 袪之高下 可以運肘 袂之長短 反詘之及肘 帶下毋厭髀 上毋厭脅 當無骨者 制有十有二幅 以應十有二月 袂圓以應規 曲袷如矩以應方 繩及踝以應直 下齊如權衡以應平……具父母大父母衣純以績 具父母衣純以青 如孤子衣純以素 純袂緣 純邊 廣各寸半

28) 『禮記』「玉藻」, 朝玄端夕深衣 深衣三袪 縫齊倍要 衽當旁 袂可以回肘 長中繼揜尺 袷二寸 袪尺二寸 緣廣寸半 以帛裏布非禮也

넷째, 열 두 폭에 관한 문제이다. 이를 裳幅의 수로 볼 것인가, 아니면 심의 제작에 소요되는 布의 幅數인가로 견해가 갈린다.

다섯째, 玉藻편 경문에는 長中繼揜尺이라고 되어 있다. 이 長과 中을 각각 長衣와 中衣로 해석하는 관점이 있고, 그와 달리 소매의 가운데 폭을 길게 한다(長中)고 해석하는 관점이 있다. 후자는 다산의 관점이다.²⁹⁾

이상의 문제 외에도 깃과 가선의 넓이를 비롯한 다수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그 가운데 續衽과 鈎邊과 曲袷 및 裳幅과 衣身을 연결하는 문제들은 상호 엮물려 있다. 그래서 이들은 유기적으로 연관되어서 심의의 전체적 형태를 잡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조선시대 심의제도에 관한 논의의 핵심적 내용(續衽鈎邊, 曲袷, 衣裳연결)을 검토한다.

3. 朝鮮의 深衣 制度說

(1) 深衣에 관한 관심과 연구 방향

深衣 制度에 관한 朝鮮 유학자들의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된 배경에는 중국 유학자들의 논의와 실천이 있었다. 北宋시대의 司馬光이 深衣를 제작하여 입고, 또 朱熹가 그렇게 한 이래로 宋明시대를 거치면서 여러 유학자들이 深衣의 제도를 설명하였다.³⁰⁾ 이로써 선비들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던 古制服飾인 深衣가 선비들의 주요한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한국에서 심의를 착용했던 역사는 조선시대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정혜경의 연구에 의하면 삼국시대까지도 거슬러 올라간다.³¹⁾ 그러나 학문적으로 심의의 제도를 연구하고 실제 착용이 가능한 심의를 제작하여 입으려는 노력이 집중되었던 것은 조선시대이며, 특히 조선 후기이다. 그렇게 심의에 관한 관심이 증폭되기 시작하는 것은 16세기 후반이다.

조선 전기의 선비인 木溪(姜渾, 1464~1519)는 “현재를 사는 사람이 되어서 현재의 의복을 입어야 한다”는 邵雍의 말을 받아들여서 深衣를 착용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다.³²⁾ 그러나 그러한 의식은 16세기 후반에 들어서서 심의를 중시하고 착용해보려는 방향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 예로 退溪는 그의 제자인 靜庵(金就礪)에게 답한 서신들에서 深衣의 제도와 그 형태를 언급하고 있다. 이 때가 1562년과 1563년의 일이다. 특히 1563(癸亥)년의 「答金而精」 別紙에서 深衣의 제도에 관한 비판과 深衣를 직접 착용한 결과를 언급하고 있다. 이는 靜庵이 深衣와 幅巾을 제작하여 보낸 것을 퇴계가 착용해본 내용을 기록한 「退溪先生言行錄」의 기사와 부합한다.³³⁾ 그밖에도 퇴계는 『주자가례』를 강의하면서 역시 심의 제도에 관해서도 강의한 기록이 講錄의 형태로 남아있다. 또 그것과 더불어서 퇴계의 제자인

29) 荀南淑, 「茶山の 斂襲衣制度 研究」 세종대 박사학위 논문 1999.12. 138면 참조

30) 丘濬의 『文公家禮儀節』 深衣制度에서는 司馬光, 朱熹가 직접 심의를 제작하여 입은 사정과 함께 여러 유학자들의 심의 관계 저술을 소개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王善의 深衣制度, 趙汝梅에게 深衣說, 牟中裴에게 深衣刊誤, 馮公亮에게 深衣考證, 朱白賢에게 深衣考義 등이 있었다. 明清 교체기에 黃宗羲는 그의 「深衣考」에서 丘濬, 吳澄, 朱右, 黃潤玉, 王廷相 등의 학설을 거론하여 비판한다. 이러한 중국 학계의 학설들이 조선에 많은 영향을 끼쳤음에 틀림없다. 이후에도 淸대의 江永의 심의 제도가 조선의 阮堂에 의하여 거론된다.

31) 鄭惠敬, 전계서, 37~39.

32) 원래 邵雍의 이 말은 司馬光이 深衣 一襲을 지어서 獨樂園에 들어가 그것을 입고 邵雍에게 이 옷을 입을 만 한가라고 물었을 때, 소강절이 답한 말로서 기록된 것이다. 다음을 참고함. 『常變通攷』 卷2, 22, 名臣錄 司馬公依禮記作深衣 冠 簪 幅巾 紳帶 入獨樂園 則衣之 謂先生(康節)可衣乎 先生曰某爲今人 當服今人之服 溫公歎 是言合理

33) 「退溪先生言行錄」卷3, 4장, 金就礪造幅巾深衣以送 先生曰幅巾似僧巾 著之似未穩 乃服深衣而程子冠晚年齋居如此 客來則改以常服焉(金誠一)

芝山(曹好益)은 「深衣」라는 제목의 七言絶句도 남긴다.³⁴⁾畿湖에서도 龜峯(宋翼弼, 1534~1599)이 『家禮註說』에서 심의 제도를 분석한다. 더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지만, 대체적으로 16세기 후반에야 비로소 심의의 제작에 관한 유학자들의 관심이 늘고 있었다.

따라서 16세기 후반부터 深衣에 관한 각종 문헌자료가 급증하여 조선말까지 이어진다. 退溪(李滉, 1501~1570)의 『退溪全書』 및 『二先生禮說』³⁵⁾, 寒岡(鄭述, 1543~1620)의 「深衣製造法」, 芝山(曹好益, 1545~1609)의 『家禮考證』, 久菴(韓百謙, 1552~1615)의 「深衣說」 「深衣圖」, 艮齋(李德弘)의 「家禮講錄」, 勿巖(金隆, 1525~1594), 愚伏(鄭經世, 1563~1633)의 『愚伏集』, 沙溪(金長生, 1548~1631)의 『家禮輯覽』, 市南(俞棨, 1607~1664)의 『家禮源流』, 磻溪(柳馨遠, 1622~1673)의 『磻溪隧錄』, 陶菴(李緯, 1680~1746)의 『四禮便覽』, 白湖(尹鑄, 1617~1680)의 「深衣制考」, 星湖(李瀾, 1681~1763)의 『星湖禮說類編』의 「深衣制度」, 東巖(柳長源, 1724~1796)의 『常變通攷』, 好古窩(柳徽文, 1773~1832)의 『好古窩先生文集』, 阮堂(金正喜)의 『阮堂集』, 華西(李恒老, 1792~1868)의 「深衣圖」, 「深衣說辨」, 「李定山深衣說後題」 性齋(許傳, 1797~1886)의 『性齋集』, 蘆沙(奇正鎭, 1798~1876)의 「答問類編」, 瓚齋(朴珪壽, 1807~1876)의 『居家雜服攷』, 寒洲(李震相, 1818~1886)의 『四禮輯要』 등등. 이들 문헌들 외에도 深衣에 관하여 언급한 문헌들은 대단히 많다. 문헌 자료 외에 초상화와 사진 자료도 많다.³⁶⁾

위의 자료들을 검토할 때 하나의 흥미로운 사실이 드러난다. 그것은 이른바 기호학과와 영남학과간에 『朱子家禮』의 심의제도에 대한 입장에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넓은 의미에서 기호학과로 분류되는 沙溪 市南 陶菴의 저술에 深衣圖는 『朱子家禮』의 그것과 동일하다. 그러나 영남학과로 분류되는 久菴의 深衣圖에는 중국에도 없는 대단히 특이한 方領深衣가 등장한다. 그것을 磻溪가 그대로 수용하고 있으며, 유사한 方領深衣圖는 한말의 華西, 性齋, 瓚齋의 저술에서도 나타난다. 그 밖의 학자들 가운데 深衣圖는 없지만, 久菴의 설을 따라서 方領深衣를 추구한 학자로서 星湖가 있다. 그리고 한말의 華西와 그 門人들은 방령 심의를 집단적으로 착용하고 있다.

그리고 속입과 구변에 대한 해석에서도 많은 차이가 있게 된다. 대체로 對襟衣로서 左右交掩하여 착용하는 방법은 『朱子家禮』의 방식인데, 이럴 경우 續衽과 鈎邊은 前裳과 後裳이 연결되는 방식을 의미한다. 『朱子家禮』의 방식을 변화없이 계승하는 학자들은 沙溪, 市南, 陶菴 등이다.³⁷⁾ 다만 沙溪의 문인인 草廬(李惟泰)는 丘濬의 설에 따라서 鈎邊을 覆縫으로 해석하여 심의를 제작하였다. 그러나 퇴계는 『朱子家禮』의 심의를 交掩하게 되면 문제가 있으므로 對襟의 형태로 착용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이다. 퇴계의 문인인 한강은 衣裳에 袷(衽)을 잇대어서 옷 자체가 直領交衽의 형태가 되는 제도를 정립한다. 이는 퇴계가 지적한 불편함을 극복하고자 丘濬이나 沙溪가 一說로만 참고했던 朱右의 학설을 정설로 채택한 것으로 추측된다. 주우의 학설은 注疏의 續衽 鈎邊 설명과 달리 『설문해자』와 『爾雅』의 衽의 해석을 따른 것이다. 이후에 衽의 형태가 비록 방령일지라도 兩襟에 袷을 덧대는 방법은 星湖, 好古窩, 華西, 瓚齋, 性齋 등의 심의제도에서 계승되고 변화되어 나타난다. 다산은 직령교입의 심의제도에 해당한다.

34) 韓國文集叢刊 55책 455쪽(『芝山集』 권1), 緇撮深衣古制淳 唐虞遺像是天真 相逢莫怪多驚俗 喚做殷周以上身

35) 이 책의 출판은 啓明漢文學硏究會 硏究資料叢書 가운데 退溪學文獻全集 第9冊이다.

36) 그밖에도 조선의 유학자들의 심의제도와 학설 및 그림 자료에 대해서는 정혜경의 전게서 참조.

37) 이들이 편찬한 『家禮輯覽』, 『家禮源流』, 『四禮便覽』의 深衣圖는 『朱子家禮』의 그것을 그대로 싣고 있다.

(2) 주요 논점과 학설의 유형

대체로 16세기 후반부터 심의 제도에 관한 탐구와 논의는 기본적으로 朱子의 심의 제도를 중심에 놓고 그것을 적절하게 재해석하려는 시도를 하거나 그에 대한 보완 또는 수정을 꾀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그 사실은 비록 주자의 학설을 존중한다고 하더라도 주자의 심의 제도는 불충분하거나 부분적 오류가 있다고 간주되었음을 의미한다. 주자의 설에 대한 보완과 개선의 방향에 따라서 조선의 유학자들의 심의제도는 여러 형태로 나누어진다.³⁸⁾ 깃의 형태로 본다면 直領衣와 方領衣로 나뉘고, 착용시 襟을 다루는 방식은 交衽과 對襟으로 나뉜다. 따라서 이를 정리하면 크게 直領交衽과 方領交衽, 및 方領對襟, 直領對襟의 방식으로 나누어진다고 할 수 있다.³⁹⁾

그러면 그렇게 여러 형태의 변형이 가능했던 이유를 요점만 정리하기로 한다. 먼저 문제가 되는 것은 衣와 裳을 연결하는 방법이다. 『朱子家禮』의 제도에 의하면 衣身의 각 폭마다 裳 3폭을 연결함으로써 전체 12폭의 裳이 衣와 연결되도록 한다. 이를 실제로 제작하면 直領 형태의 對襟衣의 형태가 이루어진다. 『주자가례』의 착용법은 兩襟을 교차하여 가리는 것(交衽)이다. 交衽하여서 左襟을 우측 옆구리로 오게 하고, 右襟을 좌측 옆구리로 오게 하면 양깃은 方的 모양(曲衿)이 이루어진다.(<그림 1>) 이것이 曲衿은 方的 모양으로서 矩에 응한다는 경문에 부합하는 방식이라고 주자는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 모양이 비록 각진 모양일지라도 正方이 아니라 斜方(일종의 마름모꼴)이 되는 까닭에 경문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문도 제기되었다.⁴⁰⁾ 그보다 더 심각한 <그림 1> 『朱子家禮』 深衣圖



문제는 곧 원래는 對襟衣인데 이를 좌우로 교차하게 되면 衣裳이 앞뒤의 균형을 잃어서 대단히 착용하기에 불편한 옷이 된다는 점이다. 그 균형을 잃게 되는 이유를 실제 착용해보고 지적한 사람이 퇴계이다. “家禮와 大全의 글과 深衣圖에 裳의 앞과 뒤가 각각 6폭인데, 앞은 왼쪽으로써 오른쪽을 가려서 6폭을 3폭이 되도록 하여 뒤의 변함없는 6폭의 넓이에 해당하게 하니 그 형태와 제도가 서로 어그러져 상응하지 못한다는 점을 나는 늘 의심하였다. 그러므로 丘氏의 법이 마땅하여서 써도 될 것 같다. 지금 마름질하여 만든 것은 구씨의 설을 사용하지 않고 단지 家禮에 의존하였는데도 衣身의 4폭과 裳의 12폭의 제도는 그 앞뒤의 廣狹도 역시 서로 어그러지지 않아서 착용하기에 편하였다. 그렇게 되는 까닭은 그 앞 6폭이 스스로 좌우로 나뉘어서 양쪽에 있게 되고 서로 交掩하지 않는 때문이다. 그러므로 衣 4폭과 裳 12폭은 잘못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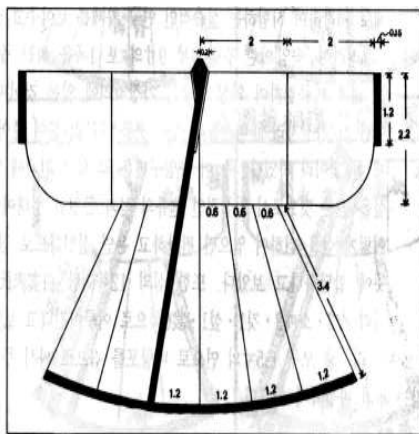
38) 정혜경은 크게 方領衣와 直領衣의 두 형태로 나누었다.(전게서)
 39) 直領交衽에 해당하는 학자들은 『朱子家禮』를 따르는 沙溪와, 朱右의 설을 바탕으로 심의를 개선한 寒岡, 茶山 등이다. 方領交衽을 주장한 학자들은 星湖, 性齋, 瓚齋 등이다. 方領對襟을 주장한 학자는 久菴이고, 直領對襟을 주장한 학자는 寒水齋(權尙夏)이다. 퇴계도 마지막 형태의 심의를 잠정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0) 이점은 이미 久菴이 가졌던 의문인 듯한데, 확실하게 지적한 것은 愚伏이다. 『愚伏集』 권9, 40장 「答權仲明」附曲衿說, 朱子家禮方領註 兩襟交掩 衽在腋下 則兩領之會自方 余嘗竊疑 其與禮經所謂曲衿如矩之文 不相應 妄意欲從溫公說 故頃答權仲明書 略言之 且引喪服辟領之制 以爲古者衣領本方之証 近溫曲禮篇 有曰天子視不上於衿 陳註 衿 朝服祭服之曲領也 據此則不獨喪服之領 朝祭之服 亦皆曲領 蓋古制本如此也 楊圖方領之狀 只是斜方 不能正方 禮經所謂負繩抱方者 似不當如此 可疑 然此圖本據朱子本註而作 何敢攻破 恨無由就質於千載之前耳

아니고 곧 그림을 그린 사람이 잘못 그려서 서로 가려서 곡겹의 설에 응하려고 했을 뿐이다. ○ 丘氏의 제도를 사용하면 曲衿에는 합당하지만 너무 천착하여 新制를 만들어냈다는 혐의가 있는 듯하다. 이제 家禮에 의거하여 자연스럽게 본체를 얻게 되었으나 단지 曲衿에 대해서는 약간 미처 들어맞지 못하는 점이 있을 뿐이다.”⁴¹⁾

퇴계는 『朱子家禮』의 제도를 일단 계승하면서도 그것의 未恰함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曲衿의 형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점을 문제삼는다. 또 對襟의 모양대로 착용하는 것이 편하다는 입장에서는 곡겹이 나올 수 없게 된다.⁴²⁾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보완이 寒岡에게서는 朱右의 설을 수용하여 설을 잇는 방식의 제도가 나오게 되고,(<그림2>) 對襟을 살리게 되면 久菴과 같은 정방형의 方領의 장안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그림3>)

寒岡은 그의 「深衣製造法」續衿鉤邊條에서 蔡淵, 楊復, 『朱子家禮』深衣圖, 丘濬, 朱右, 엄릉 방씨의 설을 두루 인용한다. 朱右의 설이 다른 학자들과 다른 점은 특히 衿에 대한 해석에 있다. 續衿의 衿에 대해서 위에 거론한 학자들은 모두 鄭玄의 설을 따라서 裳幅으로 해석하지만, 朱右는 『說文解字』의 설을 따라서 옷의 자락(襟)에 잇는 설이라고 해석한다. 그 내용을 옮기면 다음과 같다.

“白雲 朱氏가 말했다. 衿은 說文에서 衿이라고 하였다. 註에서는 交衿하면 襟이 되는데,



<그림 2> 정혜경 교수가 복원한 寒岡의 심의도

襟은 衿이라고도 한다. 正義에서 말하기를 深衣의 外衿의 가에 가선이 있다고 하였으니 深衣에 衿이 있음은 분명하다. 의당 布 한 폭(4척 3촌 5분, 布尺으로 2척 4촌⁴³⁾)을 써서 위아래를 어긋하게 자르면 위는 뾰족하고 아래는 넓게 된다. 안쪽을 옷에 연결하여 (衣身이) 여섯 폭이 되게 하고, 아래로 裳에 연결한다. 玉藻에서 말하기를 深衣의 衿은 옆에 댄다고 하였고, 王氏는 衿 아래에 衿을 다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또 말하기를 衿의 斜幅에는 (옷의) 곁에 붙여서 고정할 물건이 없으니 별도로 곧은 포를 잘라서 고리를 만들어서 衿의 아래에 붙여서 오늘날의 貼邊과 똑같이 한다. 經에서 입을 잇고 가장자리에 고리를 단다(續衿鉤邊)고 하였으니, 바로 고리로써 衿의 아래 가장자리에 잇는 것이다. 後人들이

살펴서 알지 못하고 衿이 없는 옷을 만들기에 이르렀다.”⁴⁴⁾

한강은 이를 인용한 뒤에 朱右의 설에 따라서 심의를 제작한 결과 그것이 深衣 本章의 文

41) 『二先生禮說』 4182~4183, 滉常疑家禮及大全書深衣圖 裳前後各六幅 前則以左揜右 疊六爲三 以當後仍六幅之廣 其形制相舛不相應 故丘氏之法 宜若可用 今所裁製 不用丘說 只依家禮 衣身四幅 裳十二幅之制 其前後廣狹 亦不相舛 便於著用 所以然者 其前六幅 自分左右在兩旁 不以相揜故也 然則衣四裳十二 非誤 乃作圖者 誤爲相揜以應曲衿之說耳 ○用丘制則宜於曲衿 而似嫌於太鑿爲新制 今依家禮自爲得體 但於曲衿微有未恰耳

42) 퇴계는 일단 『朱子家禮』를 부정하는 입장을 취하지는 않았지만, 그가 행한 강의를 기록한 문인들의 강록에는 左右交衿에 따른 좌임과 우임의 交鉤를 행하는 착용법을 설명하였다. 『勿巖集』「家禮講錄」(한국문집총간 38책, 516면), 左右交鉤(疑左衿右衿相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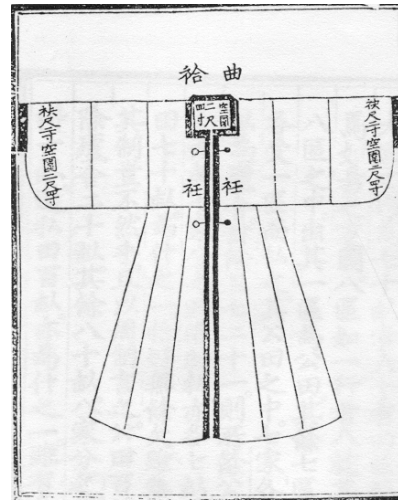
43) 衣襟뿐 아니라 裳에도 연결할 수 있는 길이다.

44) 『寒岡全書』 卷9, 25장 「深衣製造法」, 白雲朱氏曰 衿說文曰衿 註交衿爲襟 襟通作衿 正義云深衣外衿之邊有緣 則深衣有衿明矣 宜用布一幅(四尺三寸五分 布尺二尺四寸) 交解裁之 上尖下闊 內連衣爲六幅 下屬於裳 玉藻曰深衣衿當旁 王氏謂衿下施衿 又曰衿邊斜幅無旁屬 別裁直布而鉤之續之衿下 若今之貼邊 經曰續衿鉤邊 正以鉤邊續於衿下 後人不察 至有無衿之衣

勢에 순하다고 밝히고,⁴⁵⁾ 또한 변화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옛날에 제작한 것은襟이 없었기 때문에 깃이 미세하게 기운 수직이 되고 方形이 되지 못하였다. 이제 깃의 양끝으로써 각각 内外의襟 위에 꿰매어 붙이니 옷을 입을 때에 右襟의 끝은 왼쪽 옆구리에 비스듬히 교차하고, 左襟의 끝은 오른쪽 옆구리에 비스듬히 교차하여서 자연히 양쪽 깃이 엇갈려 만나는 부분이 방정하여 矩와 같았다.”⁴⁶⁾

한강의 이 설명은 續衽과 鈎邊이 사실은 깃의 모양과 긴밀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인식은 아마도 이 시기에 일반적이었던 것 같은데, 그것을 단적으로 표현한 학자는 久菴이다. 그는 “생각건대 方領을 만들면 續衽하지 않을 수 없고, 續衽하게 되면 鈎邊하지 않을 수 없으니 비록 세 가지 일이라고 하여도 실은 서로 맞물려 있는 것이다.”⁴⁷⁾ 久菴에게서 독특한 것은 上衣과 下裳을 잇는 것이 續衽이라는 해석, 당시의 일종의 對襟에 해당하는 篋排領(深衣의 遺制라고 간주하는 것, 그리고 구변은 袷(結紐)를 兩襟에 달아서 벌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라는 해석인데, 이는 실상 정방형의 깃의 형태를 유지하기 위한 그의 창안이라고 할 수 있다.⁴⁸⁾



<그림 3> 久菴의 심의도

이와 같이 영남학파의 학자들에게서는 비록 『주자가례』의 가치를 존중하더라도 그것보다 더 착용하기에 편하고 심의의 형태도 올바르게 표현될 수 있는 新制를 모색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久菴의 方領은 愚伏, 礪溪, 星湖 등에 의하여 지지된다. 그리고 衽을 袷으로 해석하는 한강의 견해는 星湖, 茶山, 礪齋, 性齋, 華西 등에게서 유사한 형태로 나타난다.⁴⁹⁾

그러나 이와 달리 沙溪는 퇴계보다 더 굳게 『朱子家禮』의 제도를 고수한다. 그는 『疑禮問解』에서 寒岡의 袷을 덧대는 심의제도를 잘못된 것으로 비판하고, 『朱子家禮』만으로도 심의 편과 옥조편의 뜻에 어긋나지 않고 심연한 뜻을 잃지 않는다고 한다.⁵⁰⁾ 그는 다만 『家禮輯覽』에서 衣身の 裁斷法에 대해서는 『朱子家禮』의 불충분함을 간접적으로 시인하고, 丘濬의 『家禮儀節』의 裁衣法을 원용하여 보완하고 있다. 그 내용은 원래 한 폭당 2척 2촌인 衣身の 길이를 앞의 것은 4촌을 더하고 뒤의 것은 1촌을 더한 길이로 재단하여야만 좌우의 옷깃을 교차했을 때에 裳의 가지런한 모양을 잃지 않는다는 것이다.⁵¹⁾ 그러나 오늘날 연구자들은

45) 上揭書, 卷9, 26장, 愚因白雲朱氏說 衣身用布二幅 袖用二幅 別用一幅裁領 又用一幅交解裁兩片爲内外襟 綴連衣身 則衣爲六幅矣 裳用布六幅裁十二片 上衣下裳通爲十二幅 於深衣本章文勢順矣

46) 위와 같은 곳, 舊製無襟 故領微直而不方 今以領之兩端 各綴内外襟上 穿著之際 右襟之末 斜交於左脇 左襟之末 斜交於右脇 自然兩領交會方如矩矣

47) 『久菴遺稿』(한국문집총간), 164下, 蓋爲方領 則不得不爲續衽 爲續衽則不得不爲鈎邊 雖爲三事 而實相因矣

48) 『久菴遺稿』(한국문집총간 59책, 163쪽) 「深衣制度」續衽鈎邊條 참조

49) 寒岡의 續衽說은 衣裳 전체에 衽을 이어 붙이는 것이므로 몸통 둘레에 적합한 심의를 제작하는 방법이 못되는 것이다. 그러나 성호처럼 衣襟에 衽을 잇는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몸통 둘레에 적합한 심의를 제작하는 길이 열린다.

50) 『沙溪全書』권35, 32장 「疑禮問解」, 愚按鄭道可所論深衣之制 出於白雲朱氏之言 其制未必是也 以家禮本文裁之 不悖於玉藻及深衣篇 亦不失深衣之義 何必創意新製與家禮有異也

51) 『家禮輯覽』深衣制度 衣條, 按家禮 衣身長二尺二寸 今前加四寸後加一寸者 裁法也 不如此則兩襟相

衣身の 길이를 조정하더라도 착용했을 때에 균형을 잃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비판한다.

또 다른 하나의 문제점은 『주자가례』는 曲裾라는 항목을 세우고 續衽과 鈎邊을 설명하는 점이다. 曲裾란 정현과 공영달의 注疏의 설에 따른 것인데, 현재 『朱子家禮』 深衣圖의 曲裾圖가 注疏를 따른 것이지만, 뒷날에는 공영달의 疏가 정현의 注에 어긋난다고 판단하고 深衣圖의 曲裾圖대로 하지 않게 되었다. 이에 대해서 주자의 문인인 蔡淵과 楊復이 사정을 자세하게 설명하였다.⁵²⁾ 續衽은 前裳과 後裳이 떨어지지 않게 兩裳이 만나는 옆부분을 연속시키는 것을 말한다.⁵³⁾ 정현 이래로 주자까지 續衽에 대한 해석은 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朱子家禮』의 鈎邊에 관한 해석에 있어서 처음에는 注疏를 따라서 曲裾라고 하였다.⁵⁴⁾ 그러나 주자는 나중에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깨닫고 구변은 曲裾가 아니라 고리(鈎)를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丘濬은 『家禮儀節』에서 구변을 覆縫이라고 수정하였다. 覆縫은 前裳과 後裳을 봉합한 부분을 다시 되풀이하여 봉합하는 것이다.

그러나 『朱子家禮』와 丘濬의 해석들은 조선의 유학자들에게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해석으로 수용된 것은 아니다. 久菴, 寒岡, 星湖, 茶山, 瓚齋, 性齋 등의 학자들에게서 보듯이 이들은 續衽鈎邊에 대하여 각각 별도의 훈고와 고증을 함으로써 각자가 추구하는 衣領의 형태와 부합하는 해석을 마련하고 있다.

이외에도 깃 위에 붙이는 가선(緣)의 형태와 폭에 대하여도 논의가 이어졌고, 소매의 형태에 대해서도 학자들의 견해가 일치하지 않는다. 학자들의 견해를 두루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이 글에서는 한정된 지면 때문에 다음 기회로 미룬다. 다만 한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다. 16세기의 예학의 근원이 되는 퇴계와 사계가 모두 『朱子家禮』의 심의제도의 불편함을 느끼고 그것에 대한 보완책 내지는 개선책을 고려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두 학자의 방향에는 차이가 있었다. 『주자가례』의 심의의 문제점에 대해서 퇴계가 사계에 비하면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고 느껴진다. 그것은 퇴계의 문하에서 『주자가례』와 다른 형태의 심의제도에 관한 학설이 정립되어 나오는 것으로 보아서 그렇다.

이러한 두 학자의 입장이 뒤의 심의제도의 유형을 결정했다고까지 말하기는 곤란해도, 이들의 입장이 영향을 끼친 것만은 틀림없다. 그래서 嶺南에서는 심의제도를 새로운 방법과 형태로 모색하는 활동이 활발하였고, 상대적으로 畿湖에서는 『朱子家禮』의 제도를 고수하는 상태로 남아있는 학자들이 주류를 이루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사계의 그러한 영향은 대체로 19세기에 들어와서는 격감하고, 久菴의 方領衣와 寒岡이 제작해 본 별도의 衿을 붙여서 交衽하는 방법을 절충한 深衣가 일반화된다고 판단된다.

疊 衣領交而不齊矣

52) 『朱子家禮』曲裾條 本註의 蔡氏와 楊氏의 설명을 참조. 이 내용은 결국 『주자가례』심의도의 곡거도 처럼 별도로 布 한 폭을 사용하여 곡거를 제작하지 않고 前裳과 後裳을 봉합하지 않고 앞뒤로 걸리도록 입는 것을 구변이라는 의미이다.(蔡氏淵曰 司馬所載方領 與續衽鈎邊之制 引證雖詳 而得古意 先生病之 賞以理玩經文與身服之宜而得其說 謂方領者 只是衣既交 自有如矩之象 謂續衽鈎邊者 只是連續裳旁 無前後幅之縫 左右交鈎 卽爲鈎邊 非有別布一幅裁之 如鈎而綴于裳旁也 方領之說 先生已修之家禮矣 而續衽鈎邊 則未及修焉)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정현의 본래의 의미라고 확인하고 있다.(楊氏復曰 自漢至今二千餘年 讀者皆求之於別用一幅布之中而註之本義 爲其掩蓋而不可見 夫疏所以釋註也 今推尋鄭註本文 其義如此 而皇氏熊氏等所釋 其謬如彼 皆可以一掃而去之矣 先師晚歲 知疏家之失 而未及修定 愚故著鄭註於家禮深衣曲裾之下 以破疏家之謬 且以見先師晚歲已定之說云)

53) 『朱子家禮』深衣圖 참조

54) 『朱子家禮』의 曲裾圖는 공영달의 疏를 근거로 삼은 것이다. 정혜경의 연구에 의하면 漢代의 曲裾深衣와 공영달이 설명하는 曲裾의 모양은 다르다. 정혜경, 『深衣』 26쪽 그림 4 曲裾深衣 참조.

4. 다산의 심의 제도설

(1) 다산의 경학적 태도

심의 제도는 원래 『禮記』玉藻篇과 深衣篇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는 근본적으로 經學에 속하는 것이다. 즉 경전의 내용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심의 제도의 원형을 터득하는 길이 되는 것이다. 다산이 활동했던 시기는 『禮記』의 심의제도가 기록되는 시기보다 적어도 2000년 정도 뒤가 된다. 그 때문에 그도 역시 경전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先儒들의 업적을 참고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취사선택의 방법이 무엇인가 궁금하다.

성리학자들이 의존했거나 강조했던 방법은 주로 朱子에 근원을 둔 것이다. 주자는 그 語錄에서 讀書는 “文勢를 먼저 파악하고 뒤에 義理를 강구한다”⁵⁵⁾는 방법을 말한다. 文勢는 글의 흐름이다. 丘濬은 심의 제도에 12폭은 12월에 응한다(制十有二幅 以應十有二月)고 할 때 12폭이 裳幅인가 衣裳을 합한 布幅인가에 대하여 의견이 분분한 것을 결단하기 위하여 주자어록의 이 글을 근거로 삼는다. 그리고 深衣章의 文勢로써 보는 방법을 내세우고 몇 가지의 근거를 들어서 그것은 衣裳의 포폭을 지칭하는 것이라는 결정을 내리고 있다. 또 蔡淵에 의하면 朱子が 古意에 부합하는 深衣 제도를 얻기 위하여 ‘理로써 經文을 玩味하는 방법을 몸소 착용할 때의 마땅함(身服之宜)과 함께’ 동원하여서 方領 및 續衽鉤邊에 관한 古意를 얻었다는 것이다.⁵⁶⁾ 비록 몸소 착용하는 방법을 사용했어도 주자에게는 文勢의 파악이나 이치에 입각한 문장의 玩味가 經旨 파악을 위한 주요 방법이다. 이것이 조선의 성리학자들에게도 계승되었다.

그와 달리 다산의 「喪具訂」의 일차적 방법은 훈고와 고증이다.⁵⁷⁾ 훈고와 고증은 문헌자료로써 실증하는 방법인데, 文勢나 理로써 玩味하는 것보다 더 실증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훈고와 고증의 자료를 바탕으로 그가 고례의 심의제도를 추론하는 과정이 곧 意解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의 이 방법들이 經旨를 얻는 기초를 확립하는 동시에 착용이 편한 심의를 제작하는 제도를 정립하는 데에 중요한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다.

훈고는 字義와 字例를 파악하여 經旨를 분명히 하는 법이다. 그에 의하면 원래 字는 정해진 사용법(定例)이 있다. 또 古人들의 字例를 알아야만 經旨를 얻는 것이 용이함은 물론이다. 그러므로 그는 “儒者가 經을 해석함에 마땅히 먼저 經旨를 구하고 그 후 천천히 義理를 강구하는 것”이라고 말하였던 것이다. 다산이 訓詁의 방면에 공이 많고 추종하는 학자도 많은 鄭玄과 孔穎達의 注疏를 비판하는 것⁵⁸⁾은 왜 그럴까?

訓詁를 행할 때에 그가 원용하는 근거는 『說文解字』 혹은 『爾雅』 같은 小學書, 혹은 先秦시대의 字例 등이다. 이러한 字例는 주로 선진 古經이나 그에 준하는 小學書로부터 확보하는 것이 그의 원칙적인 입장이다. 그 독특함은 以經證經의 방법과 결부될 때 잘 드러난다. 이는 『예기』 『의례』 등 先秦시대의 古經의 내용은 古經의 내용으로써 증명하는 방법이다. 이것이 그의 考證 방법이다. 이는 그가 漢代 이후의 注疏에서 제기된 학설에 대하여 전적인 신뢰를 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經旨를 구할 때 그는 訓詁와 以經證經의 고증방법을 함께 동

55) 『沙溪全書』卷25, 27장 『家禮輯覽』深衣制度 裳條 小註, 丘儀按朱子語錄讀書 先文勢而後義理 今以深衣章文勢觀之……

56) 『朱子家禮』本主, 蔡氏淵曰 司馬所載方領 與續衽鉤邊之制 引證雖詳 而得古意 先生病之 賞以理玩 經文與身服之宜而得其說

57) 원래 다산이 『喪禮四箋』을 편찬할 때 강조한 방법은 訓詁와 考證 그리고 意解이다.

58) 다산의 注疏의 부정적 비판의 태도와 훈고 고증 의해의 방법에 대해서는 拙稿, 「茶山禮學研究」 108~109쪽 참조

원한다. 실제로 가장 논란이 되는 續衽 鈎邊에 대해서도 그렇다.

먼저 續衽의 衽에 대한 다산의 훈고를 본다. 다산에 의하면 衽은 세 가지 의미로 새긴다. 첫째는 衣襟, 둘째 臥席, 셋째 棺의 小要이다. 다산에 의하면 衽은 이것들 외에 다른 의미로 사용되지 않았다. 그런데 정현이 喪服의 衽에 대한 주석에서 “衽은 裳의 가(際)를 가리는 것”이라고 하고 深衣의 주에서는 “衽은 裳의 옆에 있다”고 한 것은 『爾雅』나 『說文解字』와 같은 사전에는 등장하지 않는 해석이다.⁵⁹⁾ 또한 『論語』 『禮記』 『楚詞』 『史記』 등에서 사용한 衽의 예도 어디까지나 衣衽을 말하는 것이다.⁶⁰⁾ 이러한 것들을 증례로 삼아서 다산은 정현의 설에 근거가 없음을 밝힌다.

鈎邊의 鈎에 대한 훈고와 고증의 예를 들어본다. “또 살피건대 鈎는 衿이다. 衿은 주름(襞積)이다. 접어서 인꼭지(鈕)처럼 만들면 그 모양은 고리(句)가 된다. 그러므로 그 모양이 쇠붙이에 있으면 鈎라고 하고, 脯에 있으면 胸라고 하고, 실(絲)에 있으면 絢라고 하고, 옷에 있으면 衿라고 하는 것인데 그 뜻은 동일하다. 「喪服記」에서 말하기를 ‘裳幅三衿’라고 하였으니 三衿라는 것은 幅마다 세 번 주름을 잡는 것이다.”⁶¹⁾ 「喪服記」에 근거한 고증과 훈고가 적절한 예가 된다.

그는 古文의 體制에 입각해서 經文을 해석하는 것이 옳다는 태도도 취한다. 이것도 일종의 고증의 방법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는 “袂可以回肘 長中繼掩尺”이라는 경문을 해석할 때 그것을 강조한다. 정현과 공영달은 長과 中을 長衣 中衣라고 해석한다. 그러나 그는 長衣와 中衣가 비록 「聘禮」 「雜記」 「郊特牲」에 보이는 단어이지만, 長衣를 長이라 하고 中衣를 中이라고 하는 것은 古文의 體制가 아니라고 분석한다. 마치 爵弁과 皮弁을 爵 皮라고 사용하는 예가 없는 것과 같다고 그는 주장한다.

훈고를 중시하는 것은 경학의 기본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산이 강조하였던 이유는 注疏나 성리학자들의 주석이 훈고에 있어서 불철저하고 부정확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다산이 그들과 달랐던 점은 선진시대의 字例와 字義를 구하여서 深衣篇과 玉藻篇의 제도를 얻으려고 한 태도였다. 그와 달리 久菴의 方頷과 續衽鈎邊의 설은 창의적인 면은 있지만, 훈고와 고증에 있어서는 자의성이 짙다는 혐의를 면치 못한다.

이상에서 언급한 것들은 그의 방법 가운데 특징적인 것이다. 이러한 방법들을 총합하여서 그가 심의제도를 분석했던 체제에도 주목할 점이 있다. 기존의 성리학자들은 대체로 『朱子家禮』의 체제하에서 논의를 진행하였다. 예를 들면 寒岡의 「深衣製造法」은 衣, 袂, 頷, 裳, 續衽鈎邊, 黑緣, 大帶 등과 같이 실제 만들어야 하는 항목을 위주로 체제를 구성했다. 그리고 그 항목마다 다양한 학설들을 인용하여 비교 검토가 가능하게 하였다. 또 久菴은 그의 「深衣說」에서 續衽鈎邊, 曲袷, 袷 純, 負繩, 大帶, 深衣圖의 순서로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다산은 經文을 句節별로 나누고 그것에 대한 자신의 정립된 견해를 밝히고, 그 견해를 논증하는 체제를 취한다. 이는 黃宗羲의 「深衣經解」와 유사하다. 그러나 그 훈고와 고증 및 논증에 있어서 황종희의 것보다 훨씬 치밀하고 상세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의 설명에 따른 심의의 제작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로부터 정확한 심의제도를 얻는 것이 가능하다.

59) 全書 11-522.

60) 上同.

61) 『與猶堂全書』 11책 523면, 又按鈎者 衿也 衿者襞積也 屈之爲鈕 其形爲句 故在金爲鈎 在脯爲胸 在絲爲絢 在衣爲衿 其義一也 喪服記曰 裳幅三衿 三衿者 每幅三襞積也

(2) 주요 논점에 대한 다산의 견해

다산의 심의 제도에 대해서는 순남숙의 선행 연구가 존재한다.⁶²⁾ 여기에 이미 자세한 제도의 언급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산의 제도에 관한 설명 가운데 특징적인 것을 중심으로 그러한 제도가 정립된 이유와 근거를 밝히고자 한다.

가) 측정법

측정법은 심의의 규격을 정하는 방법으로서 제조할 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다. 『朱子家禮』를 비롯한 대부분의 예서와 심의 제도에 관한 학설들이 指尺 사용을 전제하고 있다. 指尺은 中指의 中節을 1寸으로 삼는 것인데, 이는 인체의 길고 짧음에 비례하는 것이므로 丘濬은 그것을 針經의 同身寸이라고 규정하였다.⁶³⁾ 예를 들면 衣身の 앞뒤의 길이가 각각 2척 2촌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指尺에 의한 것이므로 실제 길이는 사람마다 크고 작음의 차이가 있게 되고, 따라서 자신의 몸에 적절한 衣身の 재단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한 점이 설득력을 지녀서 조선의 성리학자들에게 指尺은 널리 수용되었다.

寒岡은 「深衣製造法」에서 指尺과 布尺의 단위를 함께 명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衣를 만들 때 布 2폭을 사용하는데 각각 4척 4촌짜리라고 규정하고, 그것을 指尺이라고 표기한다. 그리고 布尺으로 환산하면 2척 4촌 5분이므로 2폭을 사용하면 모두 4척 9촌이라고 설명한다.⁶⁴⁾ 이외에도 소매의 규격, 깃의 규격, 裳의 규격에도 모두 指尺과 布尺을 병기하고 있다. 『家禮輯覽』에서도 衣에 사용되는 布 2폭의 길이를 각각 4척 4촌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길이는 指尺에 의하여 측정된 길이이다. 이같이 성리학자들의 布를 재단하는 길이를 언급하는 방식은 指尺에 의한다는 점이 하나의 공통점이다.

복식이란 착용하는 사람의 신체에 들어맞아야 한다는 점에서는 지척을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 심의를 제작하게 될 때 指尺에 의존하면 많은 오차가 생길 수 있다. 그 때문에 다산은 측정하는 방법을 달리 제시하고 있다. 다산에 앞서서 지척의 부정확한 경우를 지적하고 그것과 다른 측정법을 제시한 학자는 星湖이다.

“深衣의 제도를 사람의 생김새에 따라 길게도 짧게도 넓게도 좁게도 하는 치수로 마련한 까닭에 이 指尺이라는 말이 있다. 그러나 사람의 생김새는 몸집이 호리호리하면서 키가 큰 자가 있고, 몸집이 크면서 키가 작은 자도 있으며, 손가락은 짧은데 키가 큰 자가 있고, 손가락은 긴데도 키는 작은 자가 있으니, 예전과 같이 지척을 법으로 삼을 수는 없다. 내가 생각건대 옛날의 尺은 周尺이다. 맨 처음 심의를 만들 때에 길고 짧고 넓고 좁은 그 중간을 법으로 삼았다면 그 몸집은 반드시 키는 8척이고 둘레는 3척 5촌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몸집에 따라 더하기도 하고 줄이기도 해서 알맞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 키를 재서 8척으로 나누고, 그 둘레를 재서 3척 5촌으로 나누어서 옷의 넓고 좁음, 길고 짧음을 조정하는 것이니 醫家의 가로 치수와 세로 치수와 같이 한다면 맞지 않는 것이 없을 것이다.”⁶⁵⁾

성호의 방법이 다른 점은 指尺보다는 사람의 身長과 허리둘레를 먼저 측정하여 그것을 일

62) 荀南淑, 「茶山の 斂襲衣制度 研究」 세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12, 128~156면 참조

63) 『家禮儀節』 深衣制度 裁用白細布度用指尺條 참조

64) 『寒岡全書』深衣製造法 衣, 用布二幅 各四尺四寸(指尺 ○ 布尺則二尺四寸五分 二幅四尺九寸)

65) 『星湖僿說』萬物門 指尺, 深衣之制 隨其人爲長短廣狹之度 故有指尺之說 然有細而長者 有大而短者 有指短而身長者 有指長而身短者 依舊不可爲法 愚謂尺者周尺也 其始以長短廣狹之中者爲法 則其身必長八尺圍三尺五寸也 其有不然者 宜隨其身而盈縮之 度其長 折作八尺 挈其圍 折作三尺五寸 爲衣之長廣短狹 比如醫家之橫寸縱寸之例 則無所不合

정한 수치(8척, 3척 5촌)로 나누어서 재단할 길이를 구한다는 점이다. 그것을 다산이 수용했는가는 불분명하지만 다산도 그와 비슷하게 실제 몸에 적합한 치수를 구하는 태도이다.

다산은 특히 정현 이래로 심의의 허리 둘레를 7척 2촌이라고 못박은 점을 문제삼는다. 그래서 裳을 재단할 때 衣와 縫接하는 부분의 길이를 6촌이 된다고 하는 것인데, 이는 정현 이래로 朱子 그리고 한국의 여러 학자들이 그대로 의존했던 치수였다. 그러나 우선 중국 漢代의 布幅이 조선에 그대로 통용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고, 더 큰 문제는 사람의 허리의 크고 작음의 차이가 반드시 中指의 中節에 비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그래서 다산은 6촌은 定法이 될 수 없다고 단정하고 다음과 같이 그 측정법을 밝힌다.

“이제 생각건대 옷을 마름질하는 날 먼저 본인의 허리 둘레를 측정하여서 그 尺寸을 얻고, 이에 그것을 여덟 등분한다. 그 가운데 7분을 前三後四로 삼고(前裳은 6폭이지만 겹치므로 3폭으로 계산한다), 그 나머지 1분을 邊側의 2폭으로 삼는다.(주름잡기 때문에 폭이 半減한다) 이에 衣가 이루어진다. 만약 허리 둘레가 4척 8촌이면 裳의 매 폭 上頭의 넓이는 6촌이 된다. 만약 그 허리 둘레가 4척일 뿐이면 매 폭의 上頭의 넓이는 5촌이 된다. 어찌 넓이가 일정하겠는가?”⁶⁶⁾

다산은 성호의 방법과는 다르게 실제로 표면에 나타나는 裳幅의 數인 8폭(前三後四 및 側邊)를 기준으로 삼는다. 다산의 이러한 측정법은 성리학자들이 의존했던 지척법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의 신체의 둘레나 키에 비례하는 심의의 규격을 마련하는 데 더 실제적이라고 평가되는 방법이다. 실제로 이러한 방법에 의할 경우 착용하는 사람의 신체에 들어맞는 크기의 심의를 제작할 수 있다. 그러나 주자를 비롯한 성리학자들의 치수대로 하면 보통 체격의 사람에게는 험거운 심의가 제작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나) 續衽 鈎邊

다산도 심의 제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구절이 續衽 鈎邊이라고 간주했다. 다산 이전에 심의의 형태 가운데 續衽에 관한 논의는 첫째 裳幅(前裳과 後裳)의 연결, 둘째 衣裳의 연결, 셋째 衣裳에 衿을 연결함, 넷째 衣襟에 衿을 연결함 등 네 가지가 대표적인 것으로 보인다.⁶⁷⁾ 첫 번째는 衽을 裳幅으로 해석하는 것인데, 鄭玄과 孔穎達 그리고 朱子에게서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견해이다. 그것은 『家禮輯覽』 『家禮源流』 등에서 그대로 인용했던 것이다. 두 번째 견해는 久菴의 견해인데,⁶⁸⁾ 深衣는 對襟의 방식이 된다. 그러나 이는 커다란 지지를 얻지 못한 견해이다. 세 번째 견해는 寒岡이 제안한 것이다. 그는 중국의 朱右와 方氏의 견해를 절충하여 고안한 것이다. 네 번째는 星湖 茶山의 견해이다.

다산의 학설이 성립되기까지 이전의 退溪 沙溪 久菴 寒岡 星湖 등의 학설들은 그에게 어떻게 고려된 것일까? 다산이 직접 밝힌 적은 없지만, 적어도 그들에 대한 비교와 성찰이 있었기 때문에 다산의 학설이 가능했으리라고 생각된다. 그는 退溪와 久菴처럼 對襟衣로는 착용이 어렵다는 점을 간과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 이유는 對襟衣로는 몸을 깊숙하게 가리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對襟衣로 입었을 때 그 둘레를 정현 등이 주장한 것처럼 7척 2촌으로 한다면, 그것은 대단히 험거운 옷이 되어서 착용상 많은 불편함이 있게 된다.⁶⁹⁾ 그

66) 『與猶堂全書』 11책 524면, 今擬裁衣之日 先度本人腰圍 得其尺寸 於是八分其圍 以其七分爲前三後四 以其一分爲邊側之二幅 於是乎衣成也 假如腰圍四尺八寸 每幅上頭之廣當爲六寸 若其腰圍止於四尺 每幅上頭之廣當爲五寸 豈可一定哉. 裳은 모두 12폭 혹은 12조각을 옆으로 연결하여 만든다. 이것의 재단법은 『朱子家禮』에 자세하다.

67) 그 외에 寒洲(李震相, 1818~1886)는 衽을 斜幅이라고 해석한다.

68) 衣裳連續을 衽이라고 보는 견해는 중국에서 黃宗羲가 주장했다.

서 그는 續衽에 대하여 다르게 생각했던 것이다.

다산에 의하면 별도의 布를 써서 양 옷깃에 이어 衽을 만드는 것이 續衽이다. 다산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원래 深衣의 용도가 몸을 깊숙하게 가려서 노출시키지 않으려는 데 있다. 그런데 옛날의 衣制에서는 단지 두 폭 넓이의 천을 사용하여 앞뒤로 늘어뜨려서 襟을 만드는데, 그것을 교차시키더라도 몸을 가리는 것은 깊숙하지 못하다.⁷⁰⁾ 그러므로 兩襟에 별도의 布를 재단하여 衽을 만들어 붙이면 몸을 깊숙하게 가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때문에 續衽이라는 말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⁷¹⁾ 다산의 續衽說에 대해서는 荀南淑의 연구가 자세하게 밝혀 놓았다.⁷²⁾

그의 續衽說은 새로운 것은 아니다. 그와 가장 가까운 형태로 제시된 것은 星湖의 설이다. 그러나 그 이전에 寒岡의 학설은 『朱子家禮』로부터 星湖와 茶山의 학설로 변화해 나가는 과도기적 형태여서 주목된다. 續衽하게 될 때 따져보아야 하는 것은 衣裳을 연결하는 방법이다. 裳幅의 수는 12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과 衣身 및 衽과 裳幅 전체를 연결하는 방법이 풀어야 할 과제가 된다. 한강은 일단 『주자가례』를 좇아서 衣身の 전후 좌우 폭마다 상 3폭을 연결하여서 전체 裳은 12폭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⁷³⁾ 그리고 그는 朱右와 嚴陵 方氏의 설을 절충하여서⁷⁴⁾ 兩襟과 그것에 각각 연결된 裳의 가에 별도의 포 한 폭을 斜裁하여 만든 衽을 이어 붙인다.⁷⁵⁾ 즉 그에게 있어서 衽은 衣襟 뿐 아니라, 衣와 裳이 연결된 가장자리에 길게 연결되는 斜幅인 것이다. 그리고 衽의 가에 고리(鉤)를 걸어 붙임으로써 鉤邊이라고 그는 설명한다.⁷⁶⁾

성호는 실물제작과 착용을 통해서 심의의 합리적인 형태를 만들어 보려고 했던 논의와 고심의 흔적을 많이 보여준다. 「深衣辨證」에서 그도 衣身 본체인 4폭만으로는 相掩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⁷⁷⁾ 그래서 그도 역시 별도의 布를 재단하여서 兩襟에 이어 붙이는 방법을 생각하게 되었다.⁷⁸⁾ 그에 의하면 별도의 포 한 폭을 대각선으로 마름질하여 뽕족한 부분은 위로

69) 『星湖禮說類編』 77면, 兩襟不掩 近古久菴愚伏 諸說已有之 然若合七尺二寸爲腰圍 則寬闊之甚 殆若不成貌樣

70) 『與猶堂全書』 11책 522면, 古者衣制 但用二幅之廣 垂之爲襟 而略相交掩 其蔽淺也.

71) 上同, 故別用布 裁之爲衽 續之爲兩衽 此所謂續衽也.

72) 荀南淑, 전계논문, 132~134면 참조

73) 이를 그대로 交衽하면 문제가 생김을 퇴계 뿐 아니라 다산도 지적하였다. 다산에 의하면 이 방법은 뒤의 裳은 6폭인데 앞의 裳은 좌우가 겹쳐서 3폭 넓이 밖에 되지 않는다. 『與猶堂全書』 11책 524면, 又按衣圖後六幅 全展在後面 前六幅相疊作三幅 幅之爲寸 既均而後幅倍前 不成制矣

74) 『寒岡全書』 卷9, 27장, 朱氏以爲未有無衽之衣 方氏以爲與衣相續居裳之邊 兩說相証相發. 朱右에 의하면 衽을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宜用布一幅 交解裁之 上尖下闊 內連衣爲六幅 下屬于裳(황중희 「深衣考」 가운데 「諸家圖說」) 그런데 여기서 下屬于裳을 한강은 裳의 邊에 길게 아래로 연결하는 것으로 이해한 듯하다. 그러나 朱右가 裳十二幅 用布六幅 斜裁 上廣六寸 下廣尺有二寸 上屬于衣라고 할 때의 屬의 의미는 상의 윗부분을 의신에 연결한다는 의미로 보인다. 그러면 下屬于裳도 衽의 아랫변을 상의 윗변에 연결한다는 의미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한강에게 주우의 견해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고도 생각되는 면이다.

75) 上同, 分裁一幅布 上狹下闊(四尺九寸 布尺則二尺六寸四分) 連續於衣裳之內外旁 有若今常衣之法 是所謂續衽

76) 上同, 而其邊之斜裁處 必須鉤之貼之 使不解破者 豈非鉤邊者乎

77) 『星湖禮說類編』 74면, 今以四幅當四時亦似有意 而至兩襟相掩 則後幅揜入於前 衣爲之斜 裳爲之揭 袂爲之縮 腋爲之戾 一縫一縷 莫不失正 甚不可也

78) 上同, 然則衣之幅 只當隨身穩便 皆正垂而不橫斜 其兩襟相掩處 別有屬幅 長廣一尺二寸 交解 廣頭在下 屬於左右襟 而內外相掩 上以屬於領角 下以綴裳 蓋腰縫七尺二寸 則二尺四寸在後 四尺八寸在前 亦兩疊爲二尺四寸 則裳四幅在後 又各四幅爲兩襟交掩在前也

가게 하고 넓은 부분은 아래로 가게 하고 그 옆
 변을襟의邊에 연결하는 것이衽이다. 衽을衣襟
 의 옆에 붙이는 것이續衽이다. 그리고 반드시 그
 아래에裳을 붙여야 한다. 이것이鉤邊이다. 즉
 옆의 옆(旁)을衽이라고 하고 그 아래를邊이라
 고 하는데, 衽은連續하는 것이고, 邊은 거는 것
 (鉤)이라고 그는 설명한다.⁷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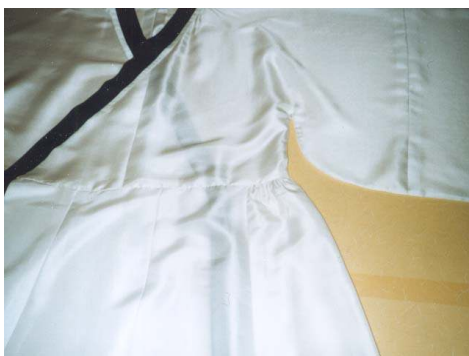
<그림 4> 茶山の 深衣 實物

星湖說에 따라서裳을衣에 연결하는 방법은
 衣身의 前後左右 폭마다裳 2 조각씩 연결하고,
 衣身의 앞 兩襟에 이어 붙인 衽에도 각각裳 2조
 각을 연결하여 도합裳 12조각을衣에 연결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⁸⁰⁾ 衣의 앞에 연결된裳의
 폭수는 모두 8조각이지만 좌우를 겹치게 되면 4

조각이 된다. 이 경우 실제 제작된 深衣의 허리
 둘레는 7척 2촌(6촌*12폭)이지만, 앞의 좌우가 겹치게 되면 4척 8촌이 되어서 人身의 허리
 둘레에 적합하여서 헐겁지 않게 된다.⁸¹⁾ 그는 鉤邊은 續衽과 상대적인 의미가 된다고 한다.

역대의 심의 제도 가운데 다산에게만 발견되는 독특한 내용은 鉤邊의 형태이다. 다산에게
 성호가 풀이한 鉤邊의 의미가 설득력을 얻지 못했던 것이다. 앞에서 소개했듯이 鉤는 고리
 모양으로裳幅을 주름잡는 것이다. 鉤邊이라고 하였으므로裳의 양쪽 邊幅에 주름잡는 것이
 다. 그러면 이는 왜 고안된 것일까, 아니면 어떻게 발견된 것일까?

먼저 鉤邊의 의미 가운데 鉤에 대해서는 앞서 살핀 바와 같고, 邊이란 옷의 곁[側]을 의미
 한다.⁸²⁾ 이러한 鉤와 邊의 의미를 종합하면 鉤邊이란裳의 양옆의 두 폭을 주름잡는 것을 말하
 는 것이다.⁸³⁾



79) 『星湖禮說類編』 76면, 鉤邊與續衽爲對意

其旁者爲衽 其下者爲邊 衽則續之 邊則鉤之也
 80) 上同, 蓋腰縫七尺二寸 則二尺四寸在後 四尺八寸在前 亦兩疊爲二尺四寸 則裳四幅在後 又各四幅爲兩
 襟交掩在前也

81) 『星湖禮說類編』 77면, 愚意則七尺二寸 三分去一 餘四尺八寸 是身之圍也 是前後之廣 各二尺四寸 合
 前襟相掩 爲七尺二寸之數

82) 『與猶堂全書』 11책 523면, 邊者 側也.

83) 上同, 鉤邊者 謂邊側二幅襞積也.

84) 上同, 蓋司上古衣裳 有一定不易之制 前三幅後四幅者 裳之本制也.

85) 上同, 深衣之裳 雖以十二幅應十二月之數 而前三後四之制 仍然無改 何者.

86) 上同, 前有六幅 而兩衿相掩 則只三幅著外 非所謂前三乎.

폭이 있지만 양변의 2폭은 양쪽 겨드랑이 아래로 들어가니 사실상 뒷면에는 4폭만 있게 되어 後四幅의 제도에 들어맞는다는 것이 다산의 주장이다.⁸⁷⁾

그렇다고 할 때 다산은 겨드랑이 아래에 해당하는 양옆의 두 폭의 형태에 주목한다. 만약 이 두 폭이 다른 폭과 차별이 없이 주름을 잡지 않고 그대로 편 상태라면, 우선 前三後四의 제도가 분명치 않을 우려가 있거나 衣의 양 겨드랑이 부분이 너무 넓어서 제도대로 되지 못하게 된다.⁸⁸⁾ 그 때문에 특별히 양 겨드랑이 아래의 폭에 주름을 잡아야 한다는 것이고, 그것을 가리켜서 鉤邊이라고 한다는 것이다.

그 외에도 鉤邊을 裳의 양옆의 각 1폭을 주름잡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要縫半下에 대한 다산의 설명에서도 찾을 수 있다.⁸⁹⁾

이는 성호까지 오면서 정착된 續衽說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착용했을 때에 人身에 맞는 심의를 제작하기 위한 탐구의 결과 나온 견해라고 할 수 있다. 성호의 腰圍에 관한 설명은 다산에게 많은 시사를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다산이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구변을 달리 해석한 것은 심의 제도에 있어서 하나의 진보라고 생각될 수 있는 성과이다.

그밖에 曲裕에 대해서 다산은 간단하게 언급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풍속은 옷깃 위에 별도로 모난 깃(方領:속명으로 冬丁이라고 한다)을 꿰맨다. 曲裕의 제도는 이 같은 것에 지나지 않으며 그 넓이는 2촌이 된다. 우리 나라의 풍속에 깃을 끝을 둥글게 깎지만 深衣의 깃은 本領이라도 그 끝을 둥글게 깎지 않는다.”⁹⁰⁾고 그는 설명한다. 이는 久菴의 방령을 추종하지 않는 것이고, 그렇다고 交衽의 결과로 나타나는 깃의 엇갈린 모양을 方形이라고 하는 『주자가례』 이래의 전통적 曲裕說에서도 벗어나 있는 것이다.

5. 結論 : 茶山의 深衣 制度說의 意義와 課題

지금까지 살핀 내용으로써 알 수 있듯이 심의 제도에 관한 유학자들의 학설에는 經學의 문제, 미학적 관심, 실제성과 실용성의 지향, 유교적 修身과 教育 등 다양한 학문적 관심이 담겨 있다. 이들을 밝혀내는 것이 철학분야의 연구과제가 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조선 후기 실학을 집대성한 茶山의 심의 제도에 관한 학설의 특징과 의의를 고찰하였다. 그를 위하여 먼저 심의 제도에 관한 학자들의 논점의 소재를 살피고, 조선시대 학자들의 심의 제도에 관한 학설의 추이를 검토하였다. 심의 제도에 관한 논점 가운데 특히 옷깃의 형태(曲裕), 續衽과 鉤邊의 해석과 제도, 衣裳의 연결 방법을 중심으로 조선시대 학자들의 학설의 추이를 살폈다. 조선시대 학자들에게서 나타나는 경향 가운데 주목되는 것은 중국에서 전래된 『주자가례』 심의제도의 불편함과 비실용성의 극복을 위한 학문적 탐구의 흐름이다. 이는 대체로 退溪로부터 문제가 제기되면서 영남학과 계열에서 『주자가례』의 제도와 다른 제도를 정립하려는 학문적 탐구와 실제 제작하는 시도가 이어진다. 본 연구에서 집중적으로 검토해본 학자는 寒岡과 久菴 星湖 및 茶山이다. 이들의 학설과 제도를 실용성을 얻는 것과 함께 經文에 규정된 심의의 상징적 형태를 올바르게 나타낼 수 있는가하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검토해 본 결과, 茶山의 제도에 이르는 과정은 점진적인 진보의 과정이라고 파악된다.

87) 上同, 後有六幅 而邊二幅入于兩腋之下 非所謂後四乎.

88) 上同, 而此二幅 若與他幅無別 則前三後四之制 猶患不明 而抑衣之兩腋太闊 不成制度 故特爲之裳積焉 此所謂鉤邊也.

89) 이에 대해서는 순남숙 전계논문 136~137면 참조.

90) 『與猶堂全書』 11책 528면, 我邦衣領之上 別綴方領(俗名曰冬丁)(中略)我邦之俗 領末圓殺 深衣之領 雖本領 不宜圓殺也

실용성이란 실제 몸에 착용하더라도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편의함이 있는 것이 곧 실용성이다. 그런데 퇴계가 『주자가례』의 제도에 입각하여 제작하여 착용했던 심의는 입고 생활하기가 매우 곤란했던 심의라고 추정된다. 본 연구를 위하여 『주자가례』의 제도를 따라서 深衣를 제작하여 보았다. 그리고 久菴의 深衣, 茶山의 深衣를 제작하였다. 『주자가례』의 심의를 퇴계가 말했듯이 對襟 형식으로 입게 되면, 허리 둘레가 7척 2촌이 되어서 너무 헐거운 옷이 된다. 鶴峯이 기록한 내용에서 퇴계가 심의를 입고 있다가 客이 오면 그것을 벗었다고 하는 이유를 알 수 있을 듯하다. 그리고 沙溪의 설대로 보완하여 交衽을 해서 입더라도 역시 衣身과 소매 裳의 모양이 어그러지고 균형이 무너지는 것은 막을 수 없다. 그렇다고 할 때 실용성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허리둘레를 어떻게 맞추는가 하는 점이다. 이를 실제적 안목으로 통찰한 학자는 星湖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보다 일보 나아가서 前三後四라는 裳制를 살리면서 전체적인 균형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는 다산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다산의 학설은 그러한 점에서 실용성과 동시에 미학적 상징을 함께 획득하는 제도로서 우수하다고 평가될 수 있다.

또한 심의의 상징적 형태 가운데 조선에서 특이한 형태는 久菴의 方領은 나름대로 설득력을 지니고 있었던 듯하다. 愚伏, 礪溪, 星湖, 瓚齋, 性齋, 華西 와 같은 쟁쟁한 학자들이 그것을 답습하였지만, 다산은 그것으로부터 벗어나 있었다. 다산의 관점에 따라서 추정해보면 久菴의 학설은 선진 시대의 자료로써 입증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와 관련하여 볼 때 나타나는 다산 예학의 특징은 鄭玄과 孔穎達 그리고 朱子로 이어지는 중국 예학의 전통에 대하여 독자적인 입장을 세우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물론 그가 정현이나 공영달 그리고 주자의 학설을 무턱대고 부정하고 거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가 도달한 결론들은 그들의 주장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심의의 학설도 그러하다. 그것은 禮制를 중국으로부터 수용하더라도 조선의 현실과 실제 삶에 부합하는 禮制를 정립하려는 실학적 관심의 구현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서 관찰되는 사실은 후대로 갈수록 실용성과 상징성을 함께 획득하려는 제도법이 정밀해지는 경향이다. 물론 학자들마다 차이가 있지만, 經文의 제도에 부합하면서도 실제 착용이 가능한 심의를 제작하려는 학자들의 업적들이 축적되고 교환되고 또 전승되면서 그 제도가 더욱 정밀하게 다듬어지는 것은 조선 유학의 흐름에서 지켜보아야 할 분야가 아닐 수 없다.

그것을 조선조 예학의 진보의 과정이라고 파악한다면, 그 진보의 흐름은 성리학자들이나 이른바 실학자들이나 막론하고 하나의 흐름속에 참여해서 학문의 발전에 공을 세우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또한 禮學이라는 학문의 분야가 성리학과 실학에 대한 구별없이 사실은 동일한 문제의식 속에 활동하게 되었던 내용도 있었음을 보여준다. 즉 착용하기에 편하고 승장성도 잘 나타내는 深衣 制度를 획득함으로써 古禮의 이상을 실현하는 길을 특히 복식제도의 영역에서 모색하려는 것이 그들의 공동 관심사였음을 보여준다. 이는 조선후기로 내려올수록 유학자들의 禮연구가 축적되면서 더욱 정밀해지고, 古禮의 원형에 가깝게 간다는 자의식이 실제의 복식제도와 제작을 통해서 성취되어 가고 있음도 보여준다. 그러한 과정에서 다산은 대단히 중요한 공헌을 하였던 셈이다.

그의 훈고와 고증의 정밀함과 시공을 초월하여서 제도를 창조적으로 해석해내는 意解의 방법은 그의 독자적인 深衣 制度를 실용성과 상징성을 고루 갖춘 우수한 심의를 제작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다고 할 수 있다.

아직까지 다산의 학설이 성립하게 된 배경과 또 그의 학설이 어떻게 전승되어 왔는가에 대

해서는 더 연구해야 할 과제이다. 이를 위해서 深衣 制度에 관한 조선후기 학자들의 학설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요청된다. 그리고 服飾을 철학적 연구 영역으로 끌어들이 수 있는 가능성은 바로 유학자들의 관심의 세계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도 유학자들이 언급한 심의에 대한 상징부여의 동기와 그 내용에 대한 다각적 검토가 필요하다.

끝으로 이 연구를 위하여 여러 학자들의 심의 제도에 관해 조언하고 또 실물 심의를 제작하여준 荀南淑 博士께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